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-49호

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6호(2006. 6. 2)로 구역지정되고, 종로구 고시 제2006-48호(2006.10.13)로 사업시행인가고시, 종로구고시 제2007-50 (2007.10.19)호로 관리처분인가된 종로구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(신지번 신문로1가 115번지 외 9필지)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08년 10월 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정비사업 명칭 :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
(신지번 신문로1가 115번지 외 9필지)
3. 정비구역면적 : 5,409.30㎡(대지 : 3,913.80㎡, 공공용지 : 1,495.50㎡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명 : 금호사옥(주) 대표이사 이용주

○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금호아시아나빌딩 17층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08년 9월 30일
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○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 분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수	주용도	비고
변경 전	3,873.10	1,441.45	37.22	60,700.03	951.25	지하8/ 지상29	업무시설	측량에 의한 조정
변경 후	3,913.80	1,460.56	37.32	60,695.50	941.25			

○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

구분	신 설			비 고
	계	도로	공원	
변경 전(㎡)	1,495.60	1,424.90	70.70	측량에 의한 조정
변경 후(㎡)	1,495.50	1,421.40	74.10	

○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권리자 변경

- 유명희, 유성울외 2건(따로붙임)

7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도시
계획과(☎ 731-1421~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